

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(제37조제5항 관련)

1.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대상자(영 제1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)

교육내용
가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.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, 사업장 위험도 분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.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마.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바. 화학사고 시 대피·대응 방법에 관한 사항 사. 개인보호구, 방제 장비 등 선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

2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

교육내용
가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.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및 분류·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.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.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바. 화학사고 시 대피·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. 화학물질 누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

3.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

교육내용
가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.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분류·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. 유해화학물질 상·하차, 이동, 취급, 보관·저장 시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.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바. 화학사고 시 대피·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. 화학물질 누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

4. 유해화학물질 운반자

교육내용
가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.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및 운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

- |   |
|---|
| 다. 유해화학물질 상·하차, 이동 시 준수사항<br>라. 화학사고 시 대피·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<br>마.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|
|---|

5.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

교육내용
가.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. 화학사고 대피·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다.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